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안심사보고서

□ 심사경과

1. 심사일정

- 가. 제출자 :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92. 9. 14
 다. 상정일자 : '92. 9. 17 (건설부장관의 인가특한 후에 계속 심사토록 의결)
 라. 보완일자 : '93. 7. 7
 마. 제상정일자 : '93. 7. 21
 바. 의결일자 : '93. 7. 21

2. 제안설명 요지

- 가. 설명자 : 건설국장
 나. 내용 : 중동신도시내 열병합 발전소 및 관내 제조업체에 대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현행 정수공급으로 인한 낭비요인을 점차 줄이고 원수를 공급함으로써 제품생산 원가절감에 기여하고 정수분의 상수도 공급량을 확충하여 시민생활 편의와 건전제정 운영에 기여코자 함.

3. 질의답변 요지

없음

4. 찬성토론

열병합 발전소와 제조업체에 원수를 많이 공급시켜 원가절감에 기여하고 또한 정수분을 주택지에 많이 공급해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해야 함.

5. 반대토론

없음

6. 소수의견

제4조(용수의 수집)중 단 필요시 1차 침진된 원수를 공급할 수도 있다라는 조문 수정 의견이 있었으나 장래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수정치 아니함.

□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안)

의안번호	112
의 결	제21회
년 월 일	(93. 7. 23)

제출년월일 : 1992. 9. 9

제안자 : 부천시장

□ 채안이유

- 중동신도시내 열병합 발전소 및 관내 공장 제조업체에 대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현행 정수공급으로 인한 낭비요인을 점차 줄여 제품의 생산원가 절감에 기여하고 상대적으로 상수도(정수) 공급량을 확충하여 시민생활 편의와 상수도 특별회계의 건전 제정운영에 기여코자 함.

□ 주요골자

- 급수지역 및 공업용수 전용배수관으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공장)에 한 강취수장 취수 원수 공급.
- 공업용수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별표1)의 요율에 의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매달 징수함.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공업용수도의 용수공급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공업용수도 용수공급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한하여 공업용 배수관으로부터 공업용수를 받고자하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지역에도 공급할 수 있다.

제3조(급수공사의 승인)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용수의 수질) 공업용수는 부천시 한강취수장에서 취수한 원수를 공급한다. 단, 필요시 1차 침전된 원수를 공급할 수도 있다.

제5조(사용료) 급수사용자에게 대하여는 (별표1)의 요율에 의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매월 징수한다.

제6조(급수장치 손료)

- ① 급수사용자에게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 ② 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부천시수도급수조례 제32조 별표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부천시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사 용 료 요 율 표

구 분 요 급	수 량(m ²)	금 액(원)	비 고
기본요금	1 ~ 100	11,500	사용량에 관계없이 기본요금 징수
초과요금	101 이상	115	초과요금은 1m ² 초과 당 요금임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심사결과

1. 심사일정

- 가. 제출자 :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93. 7. 7
 다. 상정일자 : '93. 7. 21
 라. 의결일자 : '93. 7. 21

2. 제안설명 요지

- 가. 설명자 : 도시계획국장
 나. 내 용 : - 제2조에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 제3조 제3항에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3분의 1미만으로 구성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6조에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임.

3. 질의답변 요지

없 음

4. 찬성토론

'92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문제된 사항 없음.